

## 2026년 상반기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

물가상승 등 경영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공주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「2026년도 상반기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5. 20.

공 주 시 장

### I 사업 개요

- 사업기간 : 2026. 5. ~ 12.
- 지원대상 : 전년도(2025년도) 총매출액 5억 이하 카드가맹점 중 사업자 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공주시인 소상공인\*

#### 소상공인 기준 [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(소상공인의 범위 등)]

- ① 상시근로자 수 : 5명 미만(단, 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은 10명 미만)
- ② 연간매출액
  - 숙박 및 음식점업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5억원 이하
  - 도소매업 60억원 이하
  - 농·임·어업, 광업, 건설업, 운수업 80억원 이하
  - 제조업(식료품, 의복, 가구, 전기장비) 120억원 이하 등

#### ※ 지원 대상에 대한 요건 판단기준 시점 : 사업공고일 기준

- 전년도(2025년도) 총매출액 5억 초과 시 지원 제외
- 매출액 및 카드 매출액은 국세청(공주세무서) 제공 자료 기준

※ (지원제외) 지원공고일 기준 폐업한 사업자,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(불입1),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, '21년~'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오지급으로 인한 환수대상업체 중 미환수 업체, 지방세 등 체납 중인 자, 국세청 및 여신금융협회를 통한 카드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사업체, 택사업종의 경우 중복지원으로 지원제외(2026년 브랜드택시 운영지원 사업)

- 지원내용 :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1.0% 내외 지원(최대 60만원)
  - (총매출액 3억이하) 카드가맹점 카드매출액의 0.4% 지원
  - (총매출액 3억초과 5억이하) 카드가맹점 카드매출액의 1.0% 지원

-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 시 1인당 1개 사업체만 인정
  - ※ 1인 2개 이상 신청 시 1개 사업장 외 임의 제외
  - ※ 사업장별 매출액/카드매출액 차이로 인한 지원금액 변동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1개 사업장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지원자가 많아 최종 산정된 지원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2025년 총매출액이 큰 순서로 지원 제외될 수 있음

## II

## 신청 방법

□ 신청기간 : 2026. 5. 20.(수) ~ 6. 12.(금)

□ 신청방법

- ① 경제과 방문 신청(5. 20. ~ 5. 22. / 홈페이지 구축 기간 내)
- ② **공주시청 누리집(홈페이지)을 통한 온라인 신청(5. 22. ~ 6. 12.)**
  - 공주시청 누리집(<https://www.gongju.go.kr/>) → 분야별정보 → 경제 → ‘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’ 탭 → 신청하기 →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신청
  -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온라인신청 접수지원
  - 본인인증 불가(타인 명의) 사업자의 경우, 신청서류 및 신분증 지참하여 경제과 방문 신청(대리접수 : 위임자/대리인 신분증, 위임자 도장 추가 지참)

< 신청 서류 > ※ 발급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

-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)
- ② 통장사본
- ③ 지방세완납증명서
- ④ 소상공인확인서(또는 아래 서류 중 선택)
 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상시근로자 없는 경우)
  -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(상시근로자 있는 경우)
- ⑤ (방문신청시)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
\* 2025년도 매출액 및 카드매출액은 국세청에 정보 제공 요청으로 별도 서류 불필요

□ 지급일정 : 2026. 6.

- 접수 마감 후 국세자료 확인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결정
- 비대상자에 통보(개별 문자) 및 이의신청(6. 22. ~ 6. 26.)

### Ⅲ

## 유의 사항
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「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조치 및 제재부가금이 부가될 수 있음
- 신청 시 동의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
  - 개인정보(국세정보포함) 수집·이용 동의
  - 부정수급 및 오지급 반납 협약
  - 공동대표 간 수령 계좌 등 협의 완료 협약 등
  - 동의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

### Ⅳ

## 문의

구분	연락번호	구분	연락번호
공주시 콜센터	041-840-3800	공주시 경제과	041-840-8294
유구읍	041-840-2434	사곡면	041-840-2784
이인면	041-840-2474	신평면	041-840-2812
탄천면	041-840-2542	중학동	041-840-2835
계룡면	041-840-2555	웅진동	041-840-2857
반포면	041-840-2624	금학동	041-840-2877
의당면	041-840-2665	옥룡동	041-840-2894
정안면	041-840-2676	신관동	041-840-2958
우성면	041-840-2745	월송동	041-840-2981

<서식1> 본 서식은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하여 경제과 방문 접수 시에만 사용 바랍니다.

2026년 상반기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				
대 표 자	성 명		생년월일	
	휴대전화번호 사무실번호	1. 2.	대표자 E-Mail	
	공동대표 ※해당시	성명 연락처	위 임 시 수 임 자 명	※위임장 작성시만
사업장현황 ※ 사 업 자 등록증상 내용작성	사업장명		사 업 자 등 록 번 호 (법인등록번호)	
	주 소		개 업 일	
	업태 / 종목	※ 대표 각 1개씩만 작성	사업자형태	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 <input type="checkbox"/> 면세 <input type="checkbox"/> 간이 ※간이사업자 카드매출액자료 필첨
	상시근로자수			
입금계좌	예 금 주	※대표지명 또는 업체명만 가능	은 행 명	
	계 좌 번 호	※통장사본과 반드시 일치		
신 청 인 제출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필 수 1.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)</li> <li>■ 필 수 2. 통장사본(대표자 또는 업체 명의) 사본 1부</li> <li>■ 필 수 3.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</li> <li>■ 필 수 4. 소상공인확인서(또는 아래 서류 중 선택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상시근로자 없는 경우) /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(상시근로자 있는 경우)</li> </ul> </li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(위임시) 위임자 신분증 사본 및 도장, 수임자(방문자) 신분증 지참</li> </ul>			
2026년 상반기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위임장				
위임자(대표자) 성명 :		사업장주소 :		
수임자(대리인) 성명 :		생년월일 :	연락처 :	
위 대리인에게 2026년 상반기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.				
2026년      월      일				
공 주 시 장 귀하		위임자	(서명 또는 인)	
본인(대리인)은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2026년 상반기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.				
2026년      월      일				
공 주 시 장 귀하		신청인(대리인)	(서명 또는 인)	

<서식2> 본 서식은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하여 경제과 방문 접수시에만 사용 바랍니다.

<1/2>

## 동 의 서

이하 동의 사항은 「2026년 상반기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」을 신청함에 있어 필수 동의 사항입니다.

### 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목적	개인정보 수집 항목	개인정보 보유·이용 기간
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, 사업평가, 정책수립, 통계작성	성명, 생년월일, 휴대전화번호, E-Mail, 주소, 사업장명, 사업자등록정보(법인등기정보), 사업장 전화번호, 상시근로자 수, 사업장 주소, 업태, 종목, 은행계좌정보, 매출액 정보, 납세증명내역, 월별 신용카드매입·매출 휴폐업정보	5년

※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단,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     동의함     동의하지 않음

### 2.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

제공하는 자	제공받는 자	이용목적	제공항목	제공기간
공주시	국세청 (공주세무서)	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한 항목 중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확인	폐업여부, '25년 총매출, '25년 신용카드매출자료	5년

※ 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단,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동의함     동의하지 않음

**3. 부정수급 반환 관련 확약**

본인(대리인)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'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'을 지원받은 경우,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·제9조에 따른 부정이익 등의 환수,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또한,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(위임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)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, 「형법」제231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·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확인합니다.

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.

\*예시-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3조의 '소상공인'(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기준)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사업 신청

모두 동의합니다. 예 아니오

**4. 오지급시 반납 관련 확약**

'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' 지원금에 대해 신청인의 부정확한 정보 입력, 정보 입력자의 기재 오류, 그 밖에 사유로 인해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오지급금 전액을 반납함에 동의합니다.

모두 동의합니다. 예 아니오

**5. 공동대표 간 수령 계좌 등에 대한 협의 완료 확약**

공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, 본인(신청자) 명의 통장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공동대표자(들)의 동의를 받았으며, 이에 거짓이 있을시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보조금의 반환과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.

모두 동의합니다. 예 아니오

2026년 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 일

신청인(대리인)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**공 주 시 장 귀하**

##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

표준산업분류	제외 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209 중	앞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『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』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 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 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21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2	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부동산관리업(6821) /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(68224) /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	흥신소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

표준산업분류	제외 업종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42	카지노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(예 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수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

※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지원 사업 지원 제외 업종 추가

- 경영컨설팅업(71531) 중 기획부동산업\*

\* 운영형태) 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(330㎡, 660㎡ 등)로 분할한 후,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(전화권유 판매)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(시세의 3~5배)에 매도하는 업체

## 업종별 매출액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

○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「별표 3」

<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(제8조제1항 관련) >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1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
2. 1차 금속 제조업	C24	
3. 식료품 제조업	C10	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
4. 음료 제조업	C11	
5. 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
6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
7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
8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
9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
13.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
15. 가구 제조업	C32	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
17. 수도업	E36	
18. 운수 및 창고업	H	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
19. 금융 및 보험업	K	

20. 농업, 임업 및 어업	A	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
21. 광업	B	
22. 담배 제조업	C12	
23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
24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
25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
26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
27.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
28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
29.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	C31	
30. 기타 제품 제조업	C33	
31. 건설업	F	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
32. 도매 및 소매업	G	
33. 정보통신업	J	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	E(E36 제외)	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
35. 부동산업	L	
36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
37. 사업시설 관리,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R	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
41. 교육 서비스업	P	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
43.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(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)	S(S94 제외)	

#### 비고

1.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2.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